

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0. 12. 10

2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 (이용제외 약정) 본인은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발급, 재발급, 타행/타기관 등록,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거래 시 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지정 또는 추가인증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()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고자 본 추가약정을 체결합니다.</p> <p>제2조 ~ 제4조 (생략)</p> <p>이하 내용 (생략)</p>	<p>제1조 (이용제외 약정) 본인은 (삭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발급, 재발급, 타행/타기관 등록,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거래 시 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지정 또는 추가인증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()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고자 본 추가약정을 체결합니다.</p> <p>제2조 ~ 제4조 (좌동)</p> <p>이하 내용 (좌동)</p>	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“은행이 정한 인증서”로 용어 수정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